

입 법 정 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목 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
2. 의료법(개정)	4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6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8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9
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0
7.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개정)	11
8. 화학물질관리법(개정)	12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4
1.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14
2. 인천광역시 공영장래 지원 조례	14
3.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15
4. 대전광역시 서예 진흥 조례	16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17
IV. 국외 입법례(의료소송관련)	4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 3 4 시행`21.9 5]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5)

■ 제정이유

-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위기 시 대국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 나.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실을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에게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3조제2항 및 제80조제2호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등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6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조사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17조).

마.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함(제21조제4항, 제22조제3항 후단, 제23조제6항,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4조의2).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제36조제1항 및 제67조제6호의3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0조의3 및 제77조제3호 신설).

- 자.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격리·조사·진찰·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제42조제2항·제3항 및 제79조의3 신설).
- 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신설).
- 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함(제51조제1항 후단 신설).
- 타. 감염병 예방·방역·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두는 역학조사관의 수를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함(제60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
- 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등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환자 등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제76조의2).
- 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76조의4 신설).



■ 개정이유

-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자율보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료기록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관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제4조제6항).
- 나.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조의3제2항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 다.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 「군사법원법」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와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제21조제3항제6호의2 및 제17호 신설).

- 라. 의료인 등이 환자 등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경우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5항 신설).
- 마.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 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의료관련 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6조제13호 신설).
- 사.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 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등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 기록부 등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4항 신설).
- 차.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제47조제8항, 제9항 및 제12항 신설).
-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제58조제1항).

다.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제58조의4 제3항 신설).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9 신설, 제58조의10제1항).

하.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을 정함(제58조의11 신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

[개정 및 시행 `20. 3.17.]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1

■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금액의 3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의 기준을 조정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부정 청구 등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인“을 “2명“으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인등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의 기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에서 법 제6조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3.24. 시행 `20.10.1.]

소관부서 :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 제정이유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기간 및 신고의무자의 범위 등에서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상실청구,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 등).

나.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제12조, 제13조 등).

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총 기간의 상한을 4년으로 하던 것을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로 함(제51조).

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사례관리에 필요한 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등을 추가함(제55조).

마.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1항제3호 신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 `20. 3. 24.]

소관부서 :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15

■ 개정이유

- 임업·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임업인의 날) ① 임업·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태만히 한“을 “게을리 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3.24. 시행 `21.3.25.]

소관부서 :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183

■ 개정이유

- 최근 생활 SOC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접근성이 좋은 학교 시설 및 학교용지를 활용하여 어린이집·도서관·수영장·공공기관 등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고,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일반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시설로서 단순 학교시설과 달리 관리·운영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학교 교직원이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학교복합시설의 정의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함(제2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조).
- 다.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감독기관과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소유 및 운영주체 등을 협의하도록 함(제5조).
- 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규정함(제6조).

7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20. 3. 24.]

소관부서 :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하고, 종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에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의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	-----

별표 5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0톤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300톤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의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2호나목 단서 중 “시험분석 결과”를 “「폐기물관리법」 제 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기별 시험분석 결과”로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및 시행 `20. 3. 31.]

소관부서 : 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 044-201-6838

■ 개정이유

-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로 통합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제13조).
- 나.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현행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2조 삭제 등).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3조의4).
-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수시검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제24조제4항 신설).
-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함(제31조).
- 바.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1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 `20.03.26. 시행 `20.03.26.]

**제정이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18.12.18. 개정, ' 19.12.19. 시행)으로,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및 이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된 가운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내용 및 수행 주체 (안 제10조, 제11조)
- 나.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주체 및 시기 (안 제12조)
- 다.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13조~제16조)
- 라.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17조~제19조)

2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20.03.30 시행 `20.10.01.]

**제정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영장례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시장은 매 5년마다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규정(안 제5조, 제6조)
- 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에 관한 위임·위탁 사항 규정(안 제7조)
- 마.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바. 공영장례 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안 제9조)

3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제정 `20.03.30. 시행 `20.03.30.]



■ 제정이유

- 질식사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화재대피용 안전마스크 비치를 위한 비용이나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4 대전광역시 서예 진흥 조례 [제정 `20.03.31. 시행 `20.03.31.]

■ 제정이유

- 대전광역시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대전광역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대전광역시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대전광역시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음식점 운영자에게 청결 유지를 위하여 음식점 운영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금연구역이 아닌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자율적으로 설치·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의견20-0026, 서울시 강북구]

■ 의견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음식점 운영자에게 청결 유지를 위하여 음식점 운영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자율적으로 설치·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아목)”와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자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음식점 운영자에게 청결 유지를 위하여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자율적으로 설치·관리할 것을 권고하는 사무는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또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행정청으로서 임의적·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행정지도나 행정행위 수범자의 협력을 통하여 행정목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음식점 운영자에게 청결 유지를 위하여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자율적으로” 설치·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권고에 따라 재떨이를 설치·관리할지 여부를 음식점 운영자의 자유의사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임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지도나 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권고에 따라 재떨이를 설치·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나 특정의 이행의무를 부과·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자율적으로 재떨이를 설치·관리할 것을 권고하는 것 자체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음식점 운영자에게 청결 유지를 위하여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자율적으로 설치·관

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지도를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원주시의 자치사무로서 원주시장이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의견20-0041, 강원도 원주시]

■ 의견

- 이 사안의 경우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무는 원주시의 자치사무로서 원주시장이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 「원주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하 “원주시조례안” 이라 함)은 원주시 아동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제2조제2호)이라고 정의하면서, 시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제3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

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사무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원주시의 소관 사무에 속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무가 원주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고(제18조제1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는바(제34조제1항), 생존수영교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감에게 배타적으로 집행권한이 인정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면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무를 원주시장에게 수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과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별표 1 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가목),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아동보호조치”(라목)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주시조례안에 따른 생존수영교육은 원주시 아동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능력을 기르는 교육 등을 말하는(제2조제2호) 것으로, 이는 주민의 복지나 아동보호와 관련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생명 보

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감에게 배타적으로 집행권한이 인정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하 “미취학아동”이라 함)에 대한 생존수영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궁극적으로는 원주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무에 해당되어 원주시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로서 원주시장에게 집행권한이 인정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원주시장이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유아교육법」 제3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을뿐 재정적 지원에 대한 별도의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례안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민간으로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재정법」이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나 공금 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주시장이 원주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원주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원주시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조례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다. (생략)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3.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생략)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16. (생략)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

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 6. (생략)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 5. (생략)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 3. (생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 ② (생략)

③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원주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아동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 중 만 7세 미만의 미취학자 중 지원 신청 당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방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3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제3조제1항의 “하동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하동군수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의견20-0053, 경상남도 하동군]

■ 의견

- 조례안 제3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제3조제1항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인 판단재량이 박탈될 정도로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조례안의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

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으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권한 행사를 견제·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은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부과 형식으로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부여 형식을 취하게 되는바, 이는 의무부과 형식으로 규정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강행규정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하 “하동군조례안”이라 함)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 공익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하동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함)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하동군조례안에서 공익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지급액은 군수가 결정하며(제4조), 군수가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해서 두는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수당 지급액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7조) 등에 비추어 보면 하동군조례안 제3조제1항은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공익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책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할 의무까지를 군수에게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동군 조례안 제3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하동군조례안 제3조제1항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인 판단재량이 박탈될 정도로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조례안의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하동군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취지가 공익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축소하여 공익수당 지급 경비를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취지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및 집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부여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조례안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

· 단체 · 시설과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 · 군 ·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 자문한다.

1. ~ 6. (생략)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5. (생략)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 · 군 · 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읍 · 면 · 동 단위로 읍 · 면 · 동의 사회복지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 · 면 · 동에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 ⑦ (생략)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 ⑦ (생략)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⑤ (생략)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

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의견20-0081,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질의요지

-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이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질의 가, 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와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제각각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019년 이후에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000분의 34의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비율 외의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어느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요지 가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광진구청장은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1000분의 34의 비율 보다 더 높은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요지 가와 같은 내용을 광진구의회의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고용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광진구청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광진구의회의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광진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한 “소속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고용법 제79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6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장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201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4의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비율과 범위 외의 근로자 정원에 대하여 어느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가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요지 나와 같이 광진구청장이 광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광진구청장은 광진구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1000분의 34의 비율 보다 더 높은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요지 나와 같은 내용을 광진구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고용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광진구청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광진구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광진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

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에서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함)의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 75조에 따라 지방공사에 준용되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및 「민법」과 그 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역시 같은 비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지방공사등은 2019년 이후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1000분의 34의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는 지방공사등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광진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등으로 하여금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의무 이상을 지방공사등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나,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조례에서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같은 법에서 정한 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 다항과 같은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

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 3. (생략)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 8. (생략)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생략)

⑦ (생략)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

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
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
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
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
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9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
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2. 3.>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 국내 현황

-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그런데 형행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으나(제34조),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격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원격医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 시사점

- 프랑스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e publique)」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원격전문가조언 및 원격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인-환자 간 원격医료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환자 간 원격환자관리까지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동법전은 원격의료행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격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시행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원격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 시 건강보험 혜택 적용 조건을 규정하고, 일반의 및 전문의의 원격의료 비용을 구분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월24

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하여 의료서비스 질 저하, 오진우려, 의료민영화 반대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의료사각지대 해소, ICT바이오·의료융합 산업경쟁력 확보의 관점에서 볼 때 원격의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허용은 비대면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단의 부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주(만성질환자, 경증환자, 재진환자 등) 및 시행 조건(의료인 자격검증, 환자 신원, 의무기록 내용, 원격의료비용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한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격의료 장치 사용을 위한 환자 교육도 요구된다.

■ 프랑스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 e publique)」

- 세계보건기구(WHO)는 원격医료를 “모든 의료분야 전문가들이 먼 거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 진단, 치료,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교환하고 공급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 프랑스 「공중보건법전」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보건인을 ① 의료인 ② 약사 및 의료물리학자 ③ 의료보조인 으로 구분하고 있다.

- 동법전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뿐만 아니라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제L3616-1조)와 보건의료인-환자 간 원격환자관리(제L6316-2조)를 규정하고 있다.
- 일반인 및 전문의 모두 환자에게 원격진료를 시행할 수 있고, 이때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은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급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모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원격의료행위는 당사자의 자유롭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 수행하며, 원격의료 행위에 참여하는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제R6316-2조)
- 각각의 원격의료행위는 ① 원격의료행위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의 자격을 인증 ② 환자의 신원 ③ 원격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접근 ④ 상황에 따라 환자의 원격의료장치의 사용 교육을 보장하여야 한다(제R6316-3조)
- 원격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은 의무기록 및 환자관찰시트에 원격의료수행에 관한 내용 및 의약품 처방, 원격의료행위 일시, 원격의료행위에 참여한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신원을 기록한다. 또한 원격의료행위 중에 기술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역시 기록한다.(제R6316-4조)
- 원격진료비는 대면진료비와 같다. 일반의 진료는 25유로, 전문의 진료는 30유로를 지불한다.
- 프랑스 공중보건법전은 이미 수행되고 있는 원격의료에서 범위를 넓혀

원격환자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원격환자관리 수행 조건 및 원격환자 관리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유형을 보건부장관의 명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하위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 원격환자관리는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외의 보건의료인 즉, 약사 또는 의료보조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특정한 경우 약사가 직접 백신을 처방할 수 있다.